

## 악취배출시설 해당여부



경기도 안산시 반월공단 염색단지에 위치한 회사로 이번 2006년 6월까지 악취배출시설 설치 신고서(방지계획서)를 신고하는데 활용하고자 문의 드립니다.

당사는 섬유제품제조관련회사로 의류용 접착심지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생산공정중 접착시설이 있는데 접착시설이 악취배출시설에 해당되는지 문의 드립니다.(접착시설은 대기 배출시설에는 해당되지 않는 시설입니다.)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 2의 제2호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을 악취배출시설로 정하고 있으며, 이때 어느 한 부분공정이 규모이상의 공정에 해당될 경우 원료의 저장 및 투입점에서 최종 제품 생산단계까지를 악취배출시설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한 접착시설은 악취배출시설의 한 부분공정이 될 수 있는 바, 상기 규정에 의한 시설규모의 기준 이상의 공정을 가진 악취배출시설이 있다면 접착시설은 악취배출시설의 한 부분공정이 될 수 있습니다.



악취방지법에서는 악취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악취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주 스스로 악취배출시설에 적합한 악취방지계획을 수립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하게 함으로써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악취저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고상탈취제 사용여부는 사업자 스스로 선택하여야 합니다.

## 산업폐기물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요?



삼성, LG 등에서 LCD기판을 만드는데 ITO(Indium Tin Oxide) 막을 형성 시키려면 Spattering 장치를 사용하여 LCD기판을 만드는데 이때에 리듐 또는 크롬을 사용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일본은 환경오염 문제로 리듐, 크롬 등이 함유된 폐수를 리싸이클 시켜서 재활용하므로 인해 환경오염을 막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세계 제1의 LCD생산국인데 이 폐수를 어떻게 처리 하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환경오염 방지에 관심이 많다보니 질문하는 것으로 관련 기관이나 공부할 수 있는 자료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의 배출업소에 대한 배출허용 기준 항목에는 리듐에 대한 기준은 없고 6가크롬과 크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배출업소는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배출되는 폐수에 6가크롬으로 배출되는 경우에는 6가크롬 폐수에 아황산나트륨등 환원제를 투입하여 3가크롬으로 환원시켜 유독성을 제거하고 3가크롬을 수산화물로 침전시켜 제거하는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고상탈취제 사용가능 여부



당사는 알루미늄 부품을 전문적으로 열처리 하는 업체입니다. 측정업체에 의뢰하여 악취배출시설의 배출구 및 부지경계선에서 측정값이 각각 44.8배 및 6.7배로 판정 받았습니다. 따라서 악취발생량이 미약하여 고상 탈취제를 설치하려합니다.

고상 탈취제는 특성상 별도의 동력(분무)장치가 없으며 자연상태로 설치하여 정기적(2개월)으로 교체하여 사용 하려고 합니다. 사용가능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별도배출허용기준관련



폐수종말처리장 유입수의 별도배출허용기준 환경부에 고시되었을 경우  
 1. 단속기관 및 단속시기는?  
 2. 적발시 법적 제제조치는 무엇이 있고 어디에 나와 있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부장관은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그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항목에 한하여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같은 법 제32조제8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 단속기관은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고, 같은법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보고 및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위법사항이 적발될시에는 같은법 제39조(개선명령) 및 제40조(조업정지명령)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과 같은법 제41조(배출부과금) 규정에 의한 초과배출부과금 부과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무기성오니의 사업장일반폐기물 해당여부



본 사업장은 건설기술관리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현장으로 건설폐기물을 발생량이 500톤 이상으로 폐기물을 분리발주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해 배출시설로 신고된 시설(B/P, 터널 폐수처리시설 등)에서 발생된 무기성 오니를 건설폐기물로

관리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배출시설계폐기물로 보아서 사업장일반폐기물로 관리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하여 허가받은 폐수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무기성오니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계폐기물로 관리하여야 하며, 동 폐기물을 시험분석한 결과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정폐기물로, 이내인 경우에는 일반폐기물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악취배출시설 시설보완 여부



악취관리지역이 아닌 곳의 업소를 측정하였을시 업체의 악취가 기준치를 초과하였다 면 위와 같은 경우도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시설보완을 하여야 하는지? 시에서 발표한 별도의 조례가 없다면 악취관리지역 외의 곳도 시행규칙 별표 3에 있는 기준치를 적용하면 되는지?



악취관리지역 밖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악취방지법 제7조제1항, 시행 규칙 제8조 별표 3의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에게 그 악취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악취방지법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악취관리지역 밖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개선권고를 받았을 경우 악취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악취방지법 제7조제1항, 시행규칙 제8조 별표 3의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은 악취관리지역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검사 시기와 관련

폐기물최종처리업을 하고자하는 자로서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바랍니다.

폐기물최종처리업 사업계획 적정통보를 받고 통보내용과 동일하게 처리시설을 설치한 후 매립시설검사기관으로부터 최종설치검사를 실시하여 적합통보를 받았으며 현재는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도 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본 허가전에 실시한 시설설치검사결과를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 신고시 첨부서류로 제출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는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게 되며, 동 규정에는 검사시기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립시설의 설치

를 완료하고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검사결과서를 사용개시 신고시에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수집운반업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제6항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증"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4항에 의한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증"의 영업대상이 폐목재로 같을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증(영업대상:폐목재)"으로 건설폐기물 중 폐목재를 수집운반할 수 있는지요.

반대로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증(영업대상:폐목재)"으로 생활폐기물이나 산업폐기물 중 폐목재를 수집운반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폐기물처리업자는 허가받은 영업대상 폐기물만을 수탁 받아 처리할 수 있으므로, 건설폐기물 중 폐목재를 영업대상으로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경우라면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일반폐기물 중 폐목재는 수탁받을 수 없습니다.

## 반입폐기물 변경에 관한 건

당사에서는 생활계 폐기물을 중간처리업을 득하였습니다. 폐기물 법규에 따라 반입 폐기물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민원 서류일체는 이상이 없는데 주민동의서를 받아서 제출하여야 변경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민원서류만으로도 변경이 가능한지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운반·처리대상 폐기물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바, 변경허가 시 필요한 서류는 동법시행규칙 제18조제2항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권자는 주민생활의 편익, 주변 환경보호 및 폐기물처리업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건을 붙일 수 있는 바, 주민 동의서 제출 여부는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비산먼지 발생 대상 사업장에 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5의 규정에 발생사업과 신고대상사업이 구분되어 있는데 건축폐기물 처리업이 어떻게 비급속물질의 채취, 제조, 가공업에 포함되는지 이해

가 안되며 특히 건설폐기물을 임시보관장(중간집하장)을 보유하고 영업하는 수집·운반업자의 영업형태가 채취, 제조, 가공업에 속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는 동력을 이용 파쇄, 분쇄하여 재활용 골재를 생산하기 때문에 제조에 속할지 몰라도 수집·운반업자의 보관장소(중간집하장) 보유자는 동력을 이용하여 파쇄와 분쇄를 하지 않으므로 2번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귀부의 견해는?

**A** 당초 “건축폐기물처리업”은 ‘2. 비금속 물질의 채취·제조·가공업’ 중 ‘비금속 광물 분쇄처리업’으로 규제되어 왔으나 이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개정(03.12.10)을 통하여 ‘건축폐기물 처리업’을 별도의 비산먼지발생 신고대상 사업으로 규정하였으며, ‘비금속광물 분쇄처리업’은 ‘비금속광물 분쇄 물 생산업’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별표15]의 “건축폐기물 처리업”에는 ‘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의 관련 영업이 모두 포함되므로 단순히 건설폐기물을 운송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집하장을 보유 및 운용하는 경우에는 중간집하장 소재지역의 관할 지방행정관서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관리지역내 증설건

**Q** 관리지역내 위치해 있으며, 종재산정으로 인하여 2종이 되었습니다. 금번에 성형시설 증설을 계획중인데, 오염물질량이 증가하지 않는 한도내에서는 증설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방지시설설치의무면제로 성형시설을 증설할 경우, 성형시설에서 나오는 미량의 먼지를 이론적으로 산정하여 일년 톤으로 환산할 경우 0.00톤/년이 나온다면 증설이 가능한지요? 예) 오염물질발생량 = 2.5mg/m<sup>3</sup>(일일발생량) 년간으로 환산할 경우 0.00톤/년이 나올 경우를 말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종규모에 따라 입지제한을 받는 지역에서 개정된 종산정 방법에 따라 종을 산정한 결과 종이 입지 제한에 해당되는 종으로 상향되는 경우, 기존에 설치된 시설에 대하여는 입지제한을 받지 않을 것이나, 방지시설의무면제 배출시설이라 하더라도 방지시설설치의무면제는 오염물질이 전혀 배출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증설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축종변경으로 인한 축산폐수배출 시설 변경신고



기존의 우사(면적:395 평방미터)로 신고 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 사용하다가(한우사육) 축종변경으로 사슴을 사육할 예정입니다. 목장 명칭을 바꿀려고 변경신고를 하려고 했으나 사슴은 신고대상 면적이 500평방미터이상으로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 [별표2] 규정에 따르면 소 사육시설 100m<sup>2</sup>이상 900m<sup>2</sup>미만, 사슴 사육시설 500m<sup>2</sup>이상일 경우 신고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됩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사육하고자 하는 가축의 축종 변경에 따라 대상면적이 신고 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동 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신고대상에서는 제외되나 동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축산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가 공공수역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K**